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2년 8월 24일(수) 14:00~16:00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5층)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의원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2년 8월 24일(수) 14:00~16:00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5층)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의원

목 차

[발 제]

장애인학대현황 및 사례지원의 한계 …… 3
- 서미란 팀장(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토 론]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민·관 협력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 29
- 박빈희 통합사례관리사(광산구청 복지정책과)

학대피해장애인 체험홈 입소과정에서의 지원한계 …… 39
- 배 현 부장(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시 한계점 및 대안마련 …… 55
- 박정선 원장(광주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 '보담')

학대피해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65
- 유현섭 상임이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발 제 문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현황 및 사례지원의 한계와 고민

서 미 란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현황 및 사례지원의 한계와 고민

서미란 팀장(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동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와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으로 2017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2년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설치 6년차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및 학대피해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찰의 장애인학대 통보제도[1]가 도입되기도 하였고, 2021년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조항[2]이 시행 되면서 그동안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만 가능하였던 국선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확대하기도 하였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학대는 아동이나 노인학대와 비교할 때 경제적착취의 비중이 매우 높다. 경제적착취는 피해자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약 69.6%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후견인선임 절차 지원, 안정적인 주거지 지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재판정 절차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지원,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 사법적 지원부터 복지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본 토론문에 사용된 통계는 2017.10.17부터 2021.12.31까지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신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학대 사례 흐름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업무와 신고접수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사례지원 절차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후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지원 절차

☞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접수, 장애인학대 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지칭한다.

☞ 피해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의 3에 따라 피해장애인이 **장애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례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례지원의 범위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사례지원의 우선순위는 피해장애인에게 있으며, 사례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의 내용은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 중에 피해장애인 등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림 1-1]은 '장애인학대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지원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신고접수를 받으면 피해장애인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피해장애인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족이나 보호자인 경우에도 면담 과정에 동석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또한, **학대행위의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에 따라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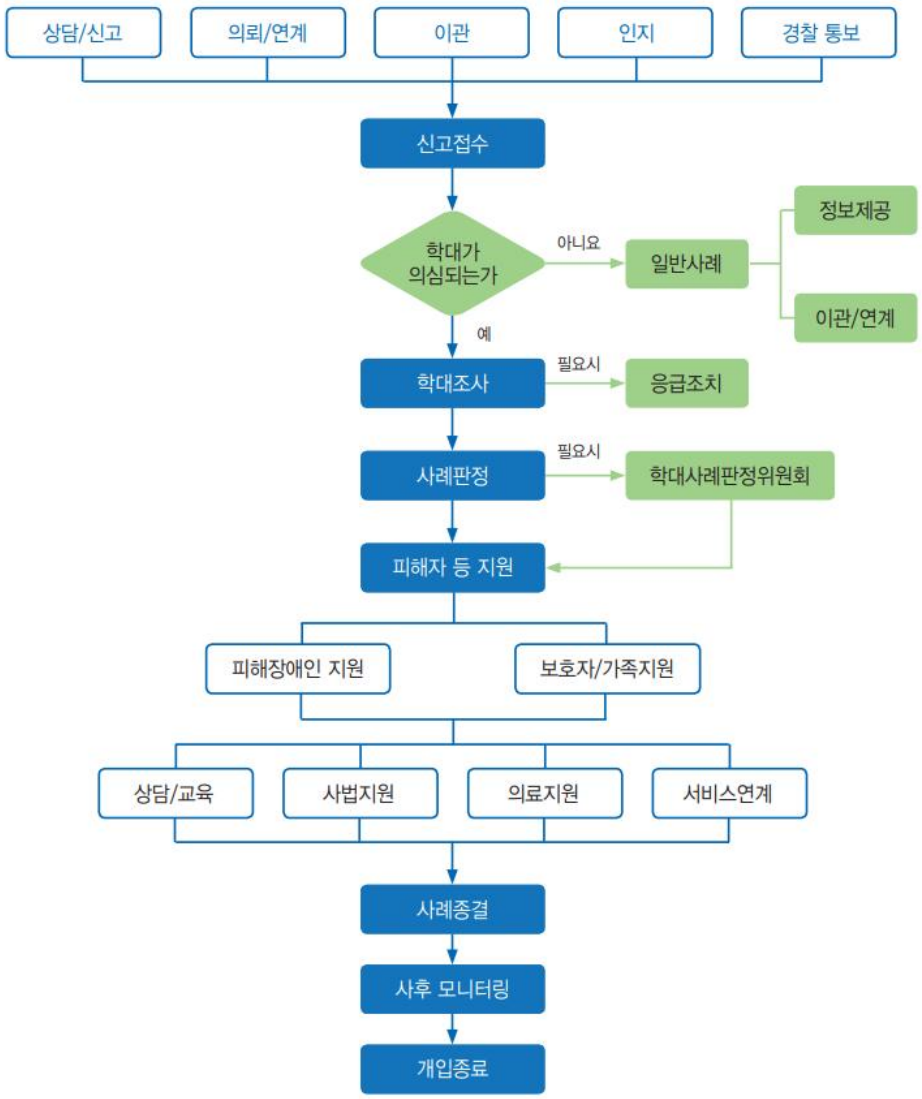

[그림 1-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Ⅱ.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현황 (2017년 10월 ~ 2021년)

1. 신고접수 현황

가. 신고접수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학대 사례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고 사례지원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와 더불어 장애인차별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통일된 사례지원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차별 상담은 일반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 지난 5년간 접수된 전체 신고는 648건으로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347건(53.5%), 일반사례는 301건(46.5%) 접수되었다.

[표 1-1] 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합 계
2017년 (10월~12월)	21	10	31
2018년	109	89	198
2019년	62	71	133
2020년	75	51	126
2021년	80	80	160
계	347(53.5%)	301(46.5%)	648(100%)

나. 접수경로

☞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개인이 신고, 이관 및 연계, 경찰통보 등이다. 지난 5년간의 접수경로를 살펴보면 [표1-2]와 같이 2019년까지는 신고 또는 타 기관의 이관 및 연계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2020년 부터는 **경찰에 의한 통보**가 추가 되었다.

☞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상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피해일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표 1-2] 연도별 접수경로

(단위: 건)

구 분	신고	이관 및 연계	경찰통보	합 계
2017년 (10월~12월)	30	1	0	31
2018년	197	1	0	198
2019년	133	0	0	133
2020년	110	4	12	126
2021년	145	5	10	160
계	615	11	22	648

다. 접수방법

☞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통한 전화신고와 온라인(이메일),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 팩스, 기관내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접수**는 2021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청각장애인이 학대 신고를 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초기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

☞ 지난 5년간 신고접수된 648건을 살펴보면, 전화가 542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한다. 아직은 문자신고의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 문자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접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팩스 신고는 28건으로 2020년부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경찰이 팩스를 이용하여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를 통보 하고 있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 연도별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구 분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내방	우편 등	합계
2017년 (10월~12월)	27	1	0	0	3	0	31
2018년	174	1	2	1	7	13	198
2019년	123	0	0	1	8	1	133
2020년	94	3	0	15	11	3	126
2021년	124	4	3	11	11	7	160
계	542	9	5	28	40	24	648

2.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자 현황

가. 신고자 유형

☞ 장애인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경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 [표 2-1]을 살펴보면 학대의심사례 347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20건**으로 전체의 **34.6%**에 해당하며, **비신고의무자**는 **227건**으로 전체의 **65.4%**에 해당한다.「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 직군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2-1] 연도별 신고자 유형

구 분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합 계
2017년 (10월~12월)	6건(28.6%)	15건(71.4%)	21건(100%)
2018년	38건(34.9%)	71건(65.1%)	109건(100%)
2019년	30건(48.4%)	32건(51.6%)	62건(100%)
2020년	19건(25.3%)	56건(74.7%)	75건(100%)
2021년	27건(33.8%)	53건(66.2%)	80건(100%)
계	120건(34.6%)	227건(65.4%)	347건(100%)

나. 신고의무자 유형

☞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종사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며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신고의무자이다.

☞ 지난 5년간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20건의 세부 직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신고의무자 직군

(단위: 건, %)

구 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활동지원 인력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센터	합 계
빈도	42	54	8	4	6	6	120
비율	35	45	6.7	3.3	5.0	5.0	100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 비신고의무자는 크게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종사자, 타인 등으로 나뉜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되고 기관종사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신고의무가 없는 단체 종사자 등이며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 일반시민 등이 해당한다.

☞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227건의 세부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종사자가 31.7%로 가장 높고, 본인 25.6%, 가족 및 친인척 22.9%, 타인 14.1%로 나타났다.

[표 2-3] 비신고의무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본인	가족 및 친인척	기관종사자	공무원	타인	합 계
빈 도	58	52	72	13	32	227
비 율	25.6	22.9	31.7	5.7	14.1	100

3.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현황

가. 학대조사

☞ 학대조사란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의심자 등 관계인을 면담조사 하며 필요시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는 **총 347건**으로 이중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334건**으로 전체의 **96.3%**에 해당한다.

☞ 학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건수는 13건으로 신고자가 피해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장애인을 찾을 수 없거나, 피해장애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된 경우 등이다.

[표 3-1] 학대조사 실시 여부 (단위: 건, %)

구 분	학대조사실시	학대조사 미실시	합 계
빈 도	334	13	347
비 율	96.3	3.7	100

나. 사례 판정 현황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장애인학대 조사 결과'**이며, 학대조사를 마친 사례는 피해기간과 피해의 정도,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사례회의 또는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구분하며, 여기서 '잠재위험사례'는 현재는 학대로 판정하기 어렵지만 향후 학대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 지난 5년간 접수된 전체 학대의심사례 347건 중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169건으로 전체의 48.7%**에 해당하며, 잠재위험사례는 11건, 비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167건이다.

[표 3-2] 장애인학대 판정 결과

(단위: 건, %)

구 분	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합 계
빈 도	169	11	167	347
비 율	48.7	3.2	48.1	100

다. 장애인 학대 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난 5년간 유형별 학대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착취가 89건으로 44.1%**에 해당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신체적학대가 59건(29.2%), 정서적학대 및 성적학대가 각각 20건으로 9.9%, 유기와 방임이 14건으로 6.9%로 나타났다.

[표 3-3] 학대 유형

(단위: 건, %)

구 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합 계
빈 도	59	20	20	89	1	13	202
비 율	29.2	9.9	9.9	44.1	0.5	6.4	100

* 학대유형이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복 집계됨.

4. 피해장애인 현황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347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피해장애인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을 살펴보고, 학대로 판정된 169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의 성별,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피해장애인 성별

☞ 장애인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 된 전체 사례 347건 중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177건으로 전체의 51%, 여성인 경우는 170건으로 49%에 해당했다.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구 분		남	여	합 계
판정 결과	학대사례	87	82	169
	비학대사례	89	78	167
	잠재위험사례	1	10	11
계		177(51%)	170(49%)	347(100%)

나. 피해장애인 연령대

☞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가 각각 18.4%, 1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4-2] 피해장애인 연령대

(단위: 건,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계
빈도	39	96	49	64	66	27	3	3	347
비율	11.2	27.7	14.1	18.4	19.0	7.8	0.9	0.9	100

다. 피해장애인 소득계층

☞ 피해장애인의 소득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217명(62.5%), 차상위계층은 14명(4.0%), 비수급자는 104명(30.0%)이었다.

[표 4-3] 피해장애인 소득계층 (단위: 건, %)

구 분	기초수급	차상위	비수급	파악안됨	합 계
빈 도	217	14	104	12	347
비 율	62.5	4.0	30.0	3.5	100

라.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와 시설,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재가는 280건으로 80.7%에 해당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43건(12.4%)로, 그 외 사회복지(거주) 시설은 6건(1.7%), 의료기관은 18건(5.2%)로 나타났다.

☞ 이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169건을 살펴보면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재가인 경우는 139건으로 전체의 82.2% 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21건(12.4%), 그 외 사회복지시설 4건(2.4%), 의료기관 5건(3%)이었다.

[표 4-4]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구 분	재가	장애인 거주시설	그 외 사회복지 (거주)시설	의료기관	합 계
학대사례	139	21	4	5	169
비학대사례	130	22	2	13	24
잠재위험사례	11	0	0	0	0
계	280	43	6	18	347

마. 피해장애인 장애등록 여부

☞ 피해장애인 중 장애등록 한 경우는 324건으로 93.4%이고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는 23건(6.6%)로 나타났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등록이 필요할 경우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피해회복을 위해 장애등록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이를 활용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건, %)

구 분	등록	미등록	합 계
빈 도	324	23	347
비 율	93.4	6.6	100

바.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장애인 324건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217건(66.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지체장애 33건(10.2%), 청각장애 21건(6.5%), 정신장애 20건(6.2%), 뇌병변장애 16건(5.0%) 순으로 나타났다.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피해는 전체의 **75.8%를 차지**하고 있어 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또한, 324건 중 7.4%에 해당하는 24건이 중복장애가 있었으며, 지적장애와 뇌전증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와 시각 또는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와 언어 또는 지적장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등이다.

[표 4-6]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단위: 건, %)

구 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간	합 계
빈도	33	16	6	21	1	**217**	9	20	1	324
비율	10.2	5.0	1.9	6.5	0.3	**66.9**	2.7	6.2	0.3	100

5. 학대행위자 현황

☞ 전체 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된 347건 중 학대로 판정한 169건의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행위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주 행위자에 대한 사항만 집계하고 있어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수는 동일하다.

가. 학대행위자 성별

☞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30건으로 66.3%, 여성은 105건으로 30.3%로, 학대행위자를 특정 할 수 없어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건이 12건(3.4%)로 나타났다.

☞ 이중, 학대조사를 통해 학대사례로 판정된 169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남성인 경우가 126건으로 74.6%, 여성인 경우가 43건 25.4%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건)

구 분		남	여	파악안됨	합 계
판정 결과	학대사례	126	43	0	169
	비학대사례	97	59	11	167
	잠재위험사례	7	3	1	11
계		230(66.3%)	105(30.3%)	12(3.4%)	347(100%)

나. 학대행위자 연령대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69건의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50대가 44건(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7.8%, 40대 18.3%, 20대 13.6% 순으로 나타났다.

☞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11건으로 전체의 6.5%에 해당하며 이는 온라인을 통한 경제적피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카카오톡 채팅방, 페이스북 채팅방, 만남 앱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학대행위자의 실명, 나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과정에서도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5-2] 학대행위자 연령대

(단위: 건,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파악안됨	합 계
빈 도	23	30	31	44	17	12	1	11	169
비 율	13.6	17.8	18.3	26.0	10.1	7.1	0.6	6.5	100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학대사례로 판정된 169건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크게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로 분류한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타인으로부터 발생한 피해가 81건으로 전체의 47.9%에 해당하며,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47건으로 27.8%,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피해가 40건으로 23.7%로 나타났다.

☞ 장애인학대의 경우 아동이나 노인학대와 달리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등등 타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비중 또한 매우 높아 피해 발생 시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과정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지원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5-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		합계
			신고의무 기관	비신고의무 기관	
빈 도	47	81	40	1	169
비 율	27.8	47.9	23.7	0.6	100

6.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법, 의료, 심리, 거주, 복지, 교육, 중재, 진정, 심리·상담, 기타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의 영역이 달라지며 한 사례에 수회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5년간의 장애인학대사례 347건에 대해 총 4,860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중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2,452회(5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법지원 1,051회(21.6%), 복지지원 688회(14.2%), 기타지원 272회(5.6%), 거주지원 194회(4%), 의료지원 122회(2.5%) 등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표 6-1] 연도별 피해장애인 지원유형(지원일자 기준) (단위: 회)

구 분	사법	의료	거주	복지	교육	심리·상담	중재	진정	기타	합계
2017년	46	21	4	37	0	117	0	3	36	264
2018년	400	40	71	186	2	804	0	21	164	1,688
2019년	204	20	42	135	4	622	5	1	22	1,055
2020년	113	15	35	136	7	369	9	3	7	694
2021년	288	26	42	194	4	540	17	5	43	1,159
계	1,051	122	194	688	17	2,452	31	33	272	4,860

☞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거주지원이란 피해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쉼터 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재가로의 거주지원을 말한다. 학대피해장애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 재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원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Ⅲ.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의 한계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조항이 신설되고, 피해장애인이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와 피해자지원팀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한 명의 상담원이 한 사례에 대한 조사부터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구조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면담을 통한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사실 확인, 증거확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단계에서는 사법지원, 의료지원, 거주지원,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장애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3~6개월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즉, **학대조사팀과 피해자지원팀을 구분하여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겪어온 한계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어려움도 있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의 한계와 어려움은 아래와 같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학대피해장애인 권리구제의 어려움 (시행 9월 1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이 고발 사건을 검사에게 불송치 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조사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고발인 이의신청 삭제)으로 앞으로는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찰 수사가 잘못되어도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9.10.)

제 245조의 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245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명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에 해당하거나,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되어, 향후 학대피해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준비와 적극적 의지 필요

광주광역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피해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입소 가능 기간이 짧고 교대 근무시 상주인력이 사실상 1명인 상황으로 집중적인 지원과 장기 입소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입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장애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조치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보호 가능한 공간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나 사실상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서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3.15. 보도자료를 통해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서울·경기·부산에 피해아동쉼터가 설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폭력 및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별도로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장애인' 응급조치의 어려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8세가 넘었을 경우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피해아동 보호절차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만 18세가 넘었으나, 아직 만 19세가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인 피해장애인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의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기간 동안 피해자를 안전한 공간에 분리조치 하여 보호 하는 것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4. 학대 행위자 조치의 한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 이외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학대행위자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복지시설 내에서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 경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5. 미등록 장애인 지원의 한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 된 사례중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로 추정되며, 학대조사와 동시에 장애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선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로 의심될 경우 과거 학적부 또는 과거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야 함)하여 장애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불가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미등록 발달장애인일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선정,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여러 복지서비스도 신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피해장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형사 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미등록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등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할 근거(임상심리평가보고서, 의료인의 진단서 등) 가 충분하다면 관련기관의 지원과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지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1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민·관 협력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박 빈 희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민·관 협력 어떻게 해 나갈것인가?

박빈희 통합사례관리사(광산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1 통합사례관리 의의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당사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을 토대로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

이웃 찾기

Q.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견하면?

|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가구

- 갑작스러운 「실직·사고·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
- 「복지혜택」으로만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가구
- 「안전(학대, 방임, 폭력)문제」와 「돌봄(장애인, 노인, 질병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02 통합사례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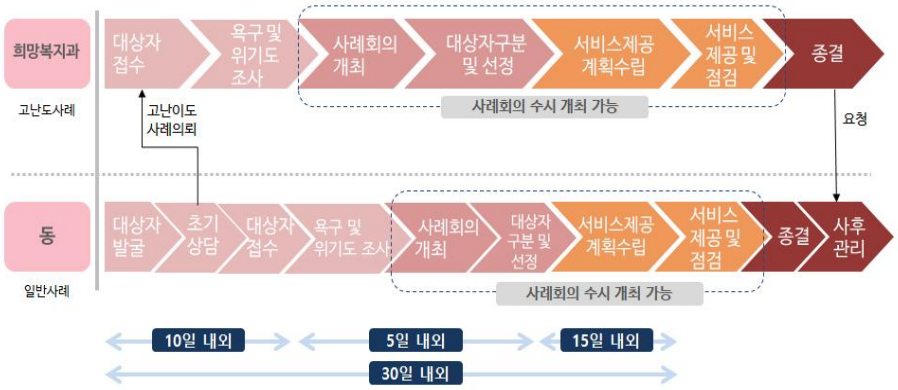

03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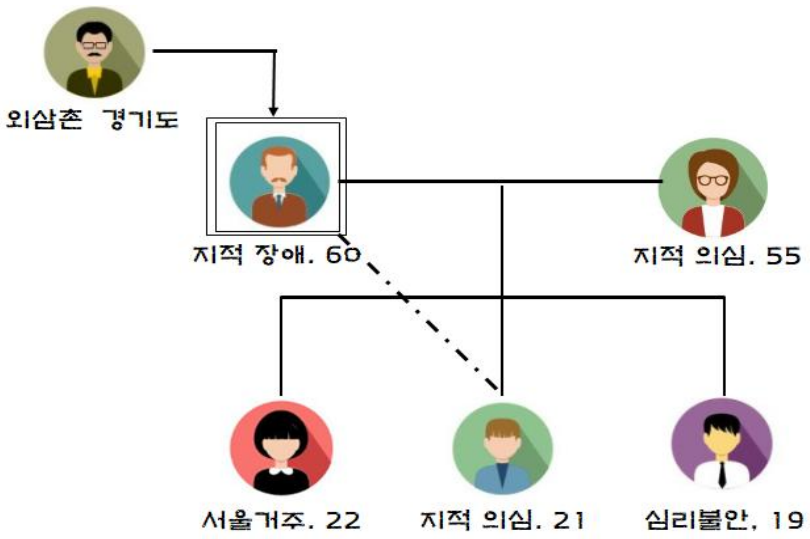

04 사례개요

의뢰기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할 행정동복지센터) '21. 6월

생활실태

가구현황 부부중심 5인가구, 세대주(지적 장애), 배우자.자2(지적 의심)

위기상황 '19년~ 사기.공갈.문서 위조의 범죄 행각으로 억대의 경제적 착취 피해. 주거 퇴거 위기 및 신용 불량 등의 위기 발생, 정신적 우울과 가족 불화. 장애등록과 수급 신청을 권유했으나 수행능력이 낮아 서비스 효과 더딤

욕구영역 안전 / 신체.정신건강 / 권익보장 / 경제 / 가족관계 / 주거 / 고용(취업)

욕구 및 문제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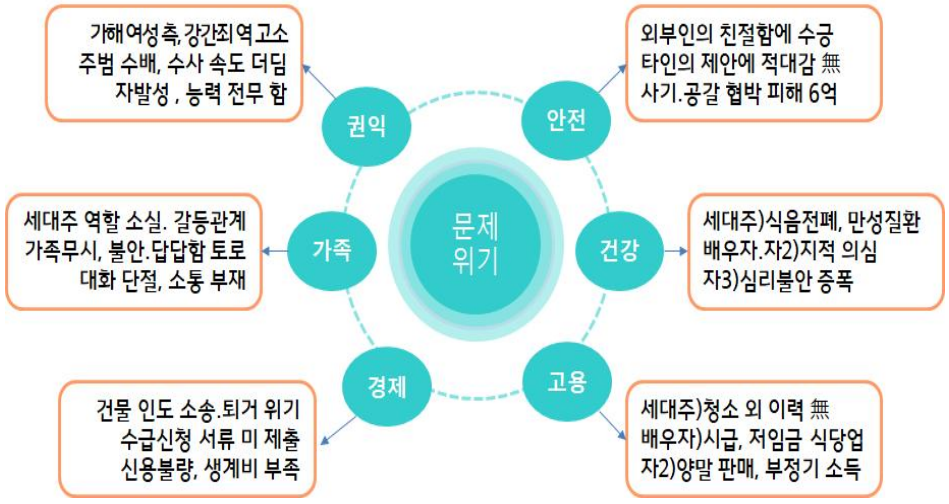

협력, 서로 돕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wangj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 내용 확인 후 추가적인 피해 내용 추가 고소 진행
피의자 2명의 불 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고 항고

가해(행위자)가 피해자를 특수강간혐의로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행위자를 무고죄로 고소.

행위자로부터 건물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류 수집.
대응방안으로 소송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변론 준비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각 종 증명서, 형사사건의 고소장 등 제출 서류

통신사의 계약서 서명과 피해자의 서명이 다른 점을 확인 후
명의도용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받은
서명이 있어 명의조사를 의뢰.

피해시기 보험가입 내용이 확인되어 해지 하는 등의 각 종 소송에 대응하는
서류 발급과 수집을 지원 함

추가로 장애등록을 위한 업무협약기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 신속 절차를 의뢰.

민간을 잊은 자, 사례관리는 없다.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및 신고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설 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법률 홈닥터
하모니예술심리치유센터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wangj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광산구
LH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산구 보건소
광주광산경찰서
World Vision
SSN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광주기독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방변호사회 Gwangju District Bar Association
하님성심병원

05 사례회의 5회

내부회의

구 분	일 자	회의 내용	
1차 회의	21. 6. 10.	경제적 착복 위기세대 학대 신고	: 대상자 선정
2차 회의	21. 6. 16.	심신미약 증거 서류 확보 등	: 서비스 계획
3차 회의	21. 8. 05.	공공부조 서류 보완, 외부 자문	: 서비스 점검

외부회의

구 분	일 자	회의 내용	
1차 회의	21. 7. 15.	법무지원과 답변서 관련 논의	: 서비스 연계
2차 회의	21. 7. 26.	지역사회 보호 위한 역할 분담	: 기관별 대응

06 서비스 제공

○긴급생계비 6회 / 노랑호루라기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서류 보완
⇒ 조사 관리 팀 협조: 조건부과 유예
○ 법무지원과 답변서 작성 요청
⇒ 건물인도 사건 선고기일 기각
○긴급주거지원 공문 의뢰
⇒ 소송 기간 내 연장. 재 신청
○배우자. 자2 지적 장애 등록
⇒ 학적부 발급. 평가 1:1 지원
⇒ 주치의 면담 및 이동 지원
⇒ 자2 군대 면제 서류 제출
○세대주. 최초 종합건강검진
⇒ 내과 질환 약물 처방
○세대주. 장애인직업평가
⇒ 평동 공단 취업

약 1,200만원
나눔 환산액

13개 기관
함께 참여한 민관

○광주지방변호사회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변호인단 구축 / 민.형사 소송 진행
⇒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사 비용 후원 연계
⇒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 사례관리 사업비
○광산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 고소장 피해 장애인 진술 조서 확보
○친인척(외삼촌) 대면상담
○ 구 장애인복지팀
⇒ 특정후견인 업무 진행
○ 구 복지기획팀
⇒ 자3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추천

강점

" 적재적소 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동일한 개입 시기 "

"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상담과 현장 기술로 서비스 점검 모니터링 "

토론 주제

" 장애인 피해 학대 사례 교육 "

" 케이스 중심의 세부적인 학대 피해 매뉴얼 제작 "

토론 2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

배 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

학대피해장애인 자립지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지원방안

배 현 부장(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Ⅰ. 들어가며

"사망한 장애인 20kg…"훈육하려 굶겼다" 잔혹한 오빠"
"뇌병변장애인 돕기는커녕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0년형"
"제주서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 학대 혐의 입건"
"지적장애인, 축사에서 30년간 강제 노역… 월급도, 연금도 빼앗겨"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말 못하는 중증 장애인 상습 폭행"

위 내용은 지난 몇 개월간 뉴스에 보도된 장애인 학대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얼마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잊을만하면 뉴스에 보도되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차별에 관한 사건 사고들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광주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각 시도의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2017년 10월 17일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하여 지난 6년간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전,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시절인 2012년부터 연계하여 피해장애인을 지원하여 왔으며,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소 이후에는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래 업무협약 내용과 같이 장애인 학대 및 차별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의 회복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장애인 학대, 차별,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정보 공유
-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와 권익옹호 자문
-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제도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 학대, 차별,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중 눈여겨 볼만한 조항 중 하나는,「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뿐 아니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의3에 의거 하여 미등록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뢰를 받아 센터에서 지원한 학대피해장애인의 체험홈 입주 과정(초기지원)과 체험홈 퇴거 후 자립지원에서 경험한 지원 상의 어려움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Ⅱ. 자립생활센터에서의 지원 사례

1. 지원 현황 개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이후 지난 6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뢰를 받아 지원한 지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구분	성별	연령대	장애유형	학대 유형	지원 내용
A	남	40대	지적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체험홈 입주, 자립지원, 사후지원
B	여	40대	지적	경제적 착취, 방임	자립지원, 사후지원
C	여	50대	지체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체험홈 입주, 자립지원, 사후지원
D	남	50대	지적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체험홈 입주, 자립지원
E	남	30대	지체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체험홈 입주, 자립지원
F	여	30대	뇌병변	신체적 학대	정서지원, 사후지원
G	남	20대	지적	정서적 학대	체험홈 입주, 자립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이후 지난 6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의뢰를 받아 지원한 학대피해 장애인은 **총 7명**(남성 4, 여성)으로 일년에 1명에서 2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4명, 지체장애 2명, 뇌병변 장애 1명이며,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학대 유형의 경우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았다.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이다.

이 중에서 현재 체험홈에 입주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체험홈을 거쳐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는 5명이다.

주된 지원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1) 거주 공간 제공
2) 동료상담 / 여가·문화생활 지원 등 정서 지원
3) 건강검진, 병원 진료 동행 등 의료 지원
4)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 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
5) 인권교육, 성교육, 안전교육 등 필요 한 교육 실시
6) 2차 피해 및 부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옹호 지원
7) 취업 및 지역자원 연계
8) 자립 후 사후 지원(방문 상담, 활동지원 연계, 물품 지원 등)

위 내용에서 보듯이 지원 대상자 중 지적장애, 알콜중독 등 정신적 장애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체험홈 퇴거 후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 실제 지원 사례

○ 인적사항

. 이름 : 이○○(女, 50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 : 지체장애(등록) / 지적장애(미등록)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공아파트
. 특이사항 :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천적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적부가 부재(과거 학교 다니지 못함) 하여 **장애여부 판정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옴
. 중독여부 : 알콜중독으로 치료 중

○ 최초 지원 배경

2019년 ○월까지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동거인에게 착취 및 학대를 당하는 중 동거인이 사망함. 동거인 사망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권인옹호기관으로 연계 되었고, 2019년 ○월 요양병원 임시보호조치를 거쳐 2019년 5월 본 센터로 상담 및 지원 의뢰되어 체험홈에 입주하게 되었다.

초기 주된 지원 내용으로는 1) 지적 장애와 치매 증상이 있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 등록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으며, 2) 본인의 욕구에 따른 부업 등 일자리를 연계, 3) 前)동거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착취(휴대폰 요금 미납 등) 피해 회복, 4) 알콜 중독 회복 및 지지 등 다양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초기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상담 및 지원 경과

- 2019년 5월 : 광주장애인권인옹호기관에서 상담 및 지원 의뢰
- 2019년 6월 : 본 센터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 및 자립훈련 실시 및 일상생활 지원.
- 2019년 7월 : 광주 ○○병원 입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료)
- 2019년 11월 : ○○주공아파트 입주 계약.
- 2020년 3월 : 상태 호전으로 인해 퇴원 계획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 2020년 5월 : 광주 ○○병원 퇴원 ⇒ ○○주공아파트로 입주
- 2021년 3월 : 화순 ○○병원(알콜중독) 입원 및 퇴원 (2022년 8월)

○ 장애특성 및 기능 정도

- **보행능력** :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나 관절 질환으로 오랫동안 걷는 것은 힘들어 함. 또한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이나 언덕을 올라갈 때 옆에서 보조가 필요함
- **언어표현** :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으나, 간혹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함
- **신변처리** : 혼자서 세수와 양치질, 샤워와 머리 감기를 할 수 있음
- **인지능력** : 숫자와 글자는 알고 계시고 쓸 수 있음
  - ■ 기억력이 좋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음
  - ■ 주위 환경에 대한 공간 기억이 떨어짐
- **금전능력** : 화폐 단위 및 쓰임에 알고 있음. 생활에 필요한 소비보다는 담배와 술을 구매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함
- **일상생활** : 혼자서 청소 및 세탁 가능, 식사 준비 등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함. 알콜 중독과 치매증상 있음

Ⅲ.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1. 체험홈 미 입주 상황 발생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쉼터 '보담'을 개소하여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 개소 이전에는 학대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와 긴급분리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준비를 위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체험홈에서 임시로 거주하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할 목적으로 입주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그리고 쉼터가 개소한 현재도 피해장애인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쉼터 입소 기간 만료로 퇴소하는 피해장애인이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 등 등의 사유로 체험홈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센터에서 현재 운영하는 체험홈 4곳 중 입주 정원이 차 있거나 성별이 맞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체험홈에 입주하지 못 하거나, 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학대피해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지원 인력의 부족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장애 미등록 및 장애 재판정 지원 상의 어려움

앞서 이야기한 업무협약 내용에서처럼 **미등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등록이 필요할 경우 등록을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애 재판정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과거 등록한 기존 장애 외에 추가적인 장애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를 위해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장애인의 지적장애 등록과 치매판정을 위해 검사 실시 등 지원 하였으나, 학적부 부재(학교를 다니지 못함) 등의 사유로 인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 대부분 지적장애인 경우가 많은데, 선천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 후천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시 판정 불가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복지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체계에서는 **미등록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긴급 활동지원의 부족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은 보통 개입 초기 단기간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개입초기 혹은 체험홈 입주초기, 체험홈 적응과 일상생활 지원, 낮 활동 조력 등을 위한 긴급 활동지원서비스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정하는 긴급활동지원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장애 미등록으로 인해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후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법인(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또는 본 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유료 활동지원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4. 다양한 지원 체계의 부족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가 장애인이나 탈시설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피해회복과 옹호 역량강화 나아가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에서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자립 역량, 학대 피해 유형, 생활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 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이나 예산 등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다 보니 본 센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어렵고,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개별 지원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Ⅳ. 학대 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언

장애인 학대 피해가 늘어난 만큼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에 발맞춰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법적·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사항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확대
- 피해 장애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협법상 친족상도례 규제 배제 특례 신설
- 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이러한 법적·제도적인 부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삶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의 우선 원칙은, 재학대 및 2차 피해 예방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의 방향은 학대 현장으로의 복귀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체험홈 퇴거 및 자립생활 실천 이후 실시하는 사후 지원이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립 이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금전관리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일터에서 만난 다른 장애인에게 또 다른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결국 피해장애인에에 대한 사후지원 시스템의 부재이다

지난 6년 동안 각 지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며, 학대 조사와 긴급 지원과 같은 초기 대응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지원 종료 후 피해자 자립 지원의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피해자지원체계 기반연구>,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방안 연구> 등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장애인지원체계를 5단계로 구체화 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구 분	내 용
1단계	학대신고 · 조사 및 상담
2단계	긴급 지원
3단계	피해 회복지원
4단계	자립 준비 지원
5단계	자립 정착 지원

이를 토대로 현장에 대입해 보자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지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나, '4단계 ~ 5단계'의 역할은 두 기관이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단계 ~ 5단계'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유사기관에 그 역할을 부여하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이 기존의 역할에서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와 예산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고충으로 제시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역시 책임을 같이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의심사례 347건 중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169건으로 전체의 **48.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들 외에도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제를 광주시도 함께 고심해야 한다.

그리고 광주 지역 학대피해장애인 중 67%에 해당하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또 다른 피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및 피해회복 지원이 완료된 이후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거나, 마땅한 거처나 소득, 가족이 없는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 강조되고 자립생활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지금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표-2 UN 장애인권릭협약 19조]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a)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b)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c)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이처럼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노력만이 아닌, 광주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라는 슬로건이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학대피해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 바로 광주여야 한다.

Ⅴ. 마치며

지금도 많은 장애인이 집과 시설, 일터와 지역에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각종 폭력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20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학대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소수의 누군가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장애인 곁에 있는 다수의 누구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학대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 일 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몫이 이니라,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이들까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인식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2021
.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실,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함께걸음 기사), 2021. 04. 09

토론 3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 시 한계점 및 대안마련

박 정 선
광주광역시 피해장애인쉼터 원장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시 한계점 및 대안마련

박정선 원장(광주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 '보담')

❑ 피해장애인쉼터의 목적과 설치 근거 및 이용 대상

구 분	피해장애인쉼터
목적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거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등) 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
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자체 등이 쉼터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피해장애인쉼터의 기능

구 분	세부기능
임시보호	· **긴급분리 및 2차 피해예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의료지원 (건강검진, 병원치료 등)
상담지원	· 학대로 인한 불안 및 우울 등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복귀지원 및 새로운 거주공간 정착지원	· **일상생활 훈련** ·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 ·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및 서비스 연계 · 새로운 거주공간 연계지원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가능시)**
기 타	· 입소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광주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 '보담'지원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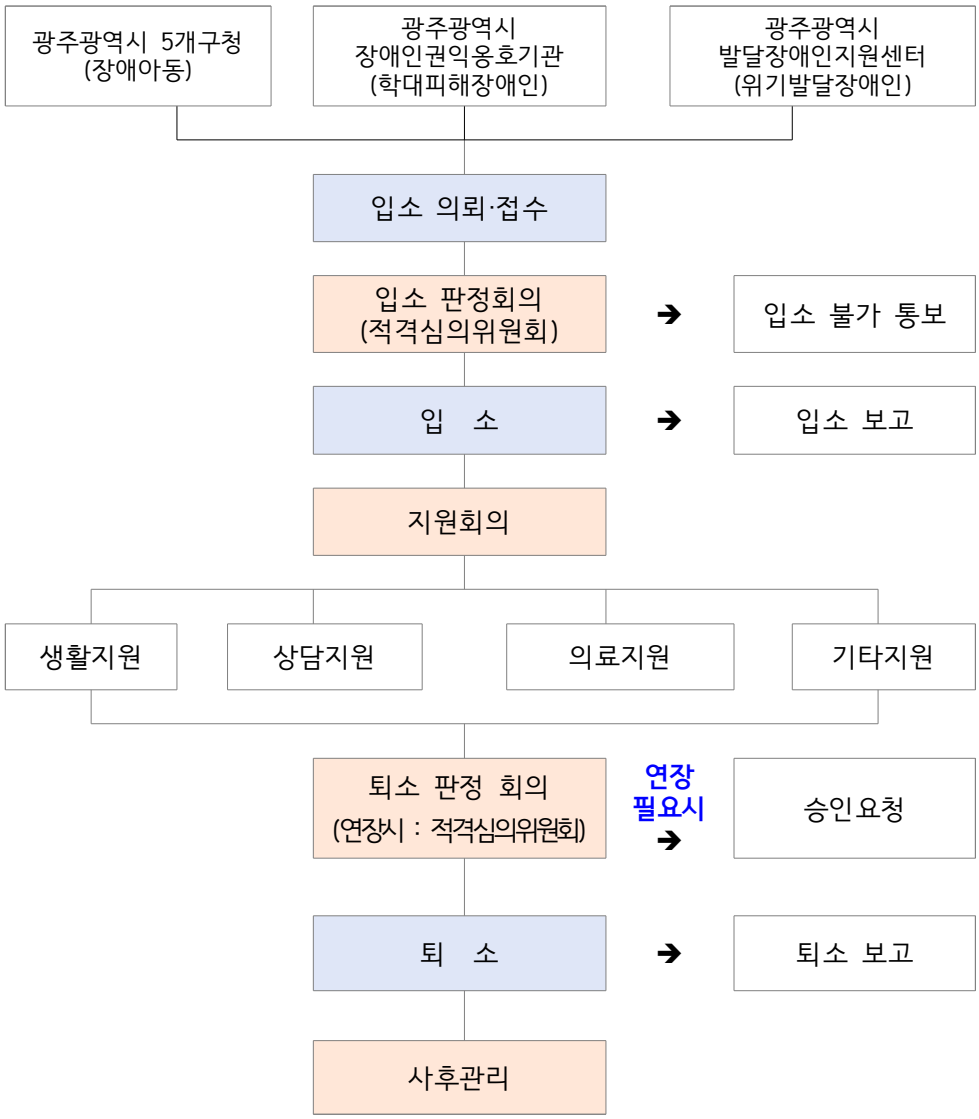

❑ 피해장애인쉼터 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원칙

1 학대피해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 및 일상생활 지원 수행 중요성 강조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밀착 케어 및 개별 상태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 된다.

2 학대상황으로부터 임시보호 서비스 핵심 가치 이행

- 피해장애인의 긴급 분리를 통한 2차적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 단, 학대사건 세부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한적인 한계로 이로 인해 기초정보를 토대로 한 단편적, 일시적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한계점을 확인해야 한다.

3 학대피해장애인의 개별적, 주도적인 활동지원 최우선 선정

- 제한적 정보로 인한 단편적 개인별 지원의 한계점 극복에 노력해야 한다.
- 쉼터 임시거주기간 내 학대 후유증상*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전문가) 연계서비스 제공: 상담, 재활, 의료 등이 필요하다.
  * 신체적 불편, 우울, 불안, 도전행동 등
- 거주자 가족회의, 자기결정권 존중, 자기옹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필요성 대두에 따른 연계기관 업무협조

- 피해장애인쉼터의 기능 중 사회복귀 지원 및 새로운 거주공간 으로의 정착지원 이행이 필요하다. 다만, 쉼터는 임시보호 기능에 중점,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이 불가피하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학대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 시 한계점

1 학대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쉼터 와 위기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쉼터의 혼용으로 인한 빈번한 2차 피해 발생 및 문제점 지속적으로 발생

- 타 시도의 경우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쉼터 입소 대상이 학대피해장애인뿐만 아닌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위기발달장애인(유기, 방임, 주 양육자의 부재,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성향, 도전적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와 고충을 「광주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 보담」의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여야 한다.

2 학대피해'장애아동의쉼터'의 필요

- 앞에 발제에서의 피해장애인 연령대가 19세 이하의 경우도 11.2%의 비율을 보이며,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피해장애인쉼터등)②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신설 2021. 7. 27)으로 인해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이다.
- 피해장애아동을 분리하여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가정폭력 으로인해 입소하는 경우가 많고, 주 양육자의 학대로 인해 분리지원이 필요하나 주 양육자와의 분리불안 호소 및 학령기이므로 등·하교 지원 및 학교에서의 요구사항(학교숙제, 준비물지원, 교사상담, 부모상담등)을 지원해야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타 입소자에 대한 지원 공백의 우려가 심각하다.
- 특히,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특성을 지닌 피해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타 입소자에 대한 폭력피해(언어폭력, 고성, 경찰출동, 폭력)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였고, 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3 피해장애인쉼터의 역할의 어려움

-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자의 임시 보호와 사회서비스 복귀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쉼터 퇴소를 전제로 한 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퇴소 이후,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사회복귀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Ⅱ권 인력배치 기준

-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 쉼터 업무 총괄관리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지도원	5명 (3급~4급)	*** 주 52시간 교대 근무** (개인별 특성 케어, 프로그램 지원, 외부활동 동행, 필요시 가사활동 및 조리업무 등)

※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로 함

5 보건복지부 지침 미준수

- 보건복지부 지침 : 직원 6명(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 단, 주택 2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원 8인의 시설로 각 숙소의 주 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자체와 쉼터의 실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현 원: 시설장 1명, 팀장 1명, 생활지도원 6명(남성4명, 여성4명)
- 202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Ⅱ 지침의 경우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광주광역시피해장애인쉼터「보담」의 경우 시설장 및 팀장이 교대근무를 함께 하고 있어 현재 시설 행정업무의 공백, 입소자 관련 업무 협의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종사자의 휴가 및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근무 대체가 불가함
- 입소자의 개인별 지원을 위해 주간근무자가 각 생활실 별로 필요로 함

❑ 피해장애인쉼터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

1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차별화 전략, 근본적 대안 마련의 필요

- 학대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쉼터 와 위기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쉼터 체계화 된 공간 분리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2 쉼터 서비스 제공 시 권익옹호 우선의 원칙

- 쉼터는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은 공동생활을 함에 따라 이용자 간의 고충이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자원 충원 되어야 한다.
  ① 개인공간(1인실 등) 제공의 불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② 집단 활동을 원하지 않을 시 대체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현상 보완이 필요하다
  ③ 개인 욕구 해소를 위한 서비스 자원 부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④ 학대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 시 자립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하다

3 종사자 충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기준 준수

- 1 생활실 기준,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인력배치 기준(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및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종사자 충원이 되어야 한다.
- 남·여 생활실 3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지원 미비와 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어려움(생활지도원과 행정인력이 발생한다.

4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업무 전문화 및 표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연도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외 연구보고(2017년) 1건
- 2015년 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관련된 업무 기준 부재
- 피해장애인쉼터 정보 공유 및 선견지 사례 공유
  ① 2021년 사례반영 및 소통을 적극적으로 함.
  ② 전국 피해장애인쉼터의 시설장 간담회('21.8) 운영사례 공유함.
  ③ 제주 쉼터 견학('21.12)으로 쉼터운영의 실제 사례를 반영함.

5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

- 학대피해장애인과 위기발달장애인의 임시보호, 정서적·심리적 심리안정, 피해회복,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지원 인력은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원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
- 유관기관과의 결합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 될 수 있는 정보의 습득이 양질의 서비스 지원의 관건이다.

토론 4

학대피해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및 지역사회의 역할

유 현 섭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학대피해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광역시 및 지역사회의 역할

유현섭 상임이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3]과 59조13[4]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 '보담'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 '보담'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5] 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와 장애인학대에 대응할 시설·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은 학대유형, 가족 구성, 주거형태, 장애 정도, 입소자 성별, 종사자 성별, 입소자 정원, 유사 시설 간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에 따라 여전히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와 발제문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 현황 및 사례지원의 한계와 고민(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미란 팀장)'을 중심으로 장애인학대피해(위기발달장애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공공(광주광역시)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

---

3) 장애인복지법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Ⅰ. 관련 용어 설명-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성희롱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학대행위자: 장애인 학대행위를 한 사람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 일반사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이나 기관문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불만이나 하소연을 토로하여 위로나 인정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학대조사: 신고접수 된 사례의 피해자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의 조사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장애인학대 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 지원: 사례 판정 이후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감소, 학대의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함
- 심리지원: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함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함.
- 기타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개, 피해장애인에 대한 교육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나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함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실시하는 피해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피해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칭함

Ⅱ. 장애인학대 주요현황[6)]

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전년도(3,658건)보다 19.6% 증가한 총 4,376건임
- 학대의심사례 1,923건(43.9%), 일반사례 2,453건(56.1%)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13	5.9	654	26.7	767	17.5
부산		169	8.8	178	7.3	347	7.9
대구		120	6.2	88	3.6	208	4.8
인천		77	4.0	99	4.0	176	4.0
광주		62	3.2	71	2.9	133	3.0
대전		64	3.3	85	3.5	149	3.4
울산		101	5.3	79	3.2	180	4.1
세종		51	2.7	71	2.9	122	2.8
경기	경기	258	13.4	382	15.6	640	14.6
	경기북부	139	7.2	202	8.2	341	7.8
	소계	397	20.6	584	23.8	981	22.4
강원		117	6.1	53	2.2	170	3.9
충북		132	6.9	67	2.7	199	4.5
충남		121	6.3	51	2.1	172	3.9
전북		92	4.8	122	5.0	214	4.9
전남		46	2.4	103	4.2	149	3.4
경북		118	6.1	28	1.1	146	3.3
경남		90	4.7	28	1.1	118	2.7
제주		53	2.8	92	3.8	145	3.3
계		1,923	100.0	2,453	100.0	4,376	100.0

▶ 지역별 신고접수는 경기가 981건(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767건(17.5%), 부산 347건(7.9%) 순이었음
- 전체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는 경기 397건(20.6%), 부산 169건(8.8%) 등의 순이었음

6)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9년 1월~12월)

▶ 광주광역시 연도별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7]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구 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합 계
2017년(10월~12월)	21	10	31
2018년	109	89	198
2019년	62	71	133
2020년	75	51	126
2021년	80	80	160
계	347(53.5%)	301(46.5%)	648(100%)

나) 신고접수 방법별 현황

▶ 신고접수는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가 3,524건(80.5%)으로 가장 많았고, 인지신고 249건(5.7%), 내방신고 235건(5.4%) 등의 순이었음

▶ 전체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58건(44.6%)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임

-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43.2%(371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5.9%(308건) 등의 순이었음

다)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현황

▶ 학대조사는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1,923건 중 1,7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율은 89.5%로 전년도 조사율(80.6%) 대비 8.9% 증가한 수치임

▶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이며 비학대사례는 783건(40.7%),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나타남

▶ 2019년 신규 접수사례(1,923건)와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사례(387건) 총 2,310건에 대해 총 24,7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지원횟수는 평균 10.7회로 나타남

7) 발제문(서미란 팀장)

라) 피해장애인 성별, 장애유형 등

▶ 성별 및 연령

-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2.5%(496명)로 여성 47.5%(449명)보다 5.0% 높게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 21.7%(205명), 30대 18.6%(176명)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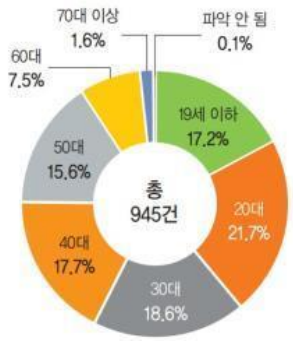

▶ 장애 유형 및 정도

-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885건(93.7%)이며,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6.3%(60건)이었음
-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9%(6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7.1%(67건), 뇌병변장애 6.1%(58건), 정신장애 5.8%(55건) 등의 순이었음
- 피해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6.4%(853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3.6%(32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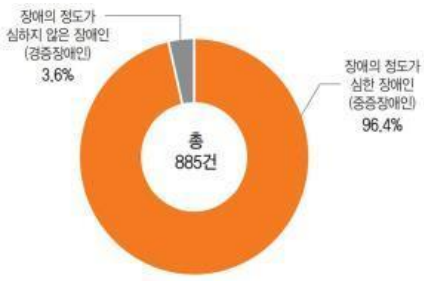

마) 학대행위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 성별 및 연령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660명(69.8%)으로 여성 273명(28.9%)보다 약 2.4배 이상 많았음
- 학대행위자 연령은 50대가 24.4%(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6%(2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인, 부모 등의 순이었음
- 타인의 경우는 지인이 18.3%(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6.8%(64건) 등의 순이었음
- 기관종사자의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7.3%(69건) 등의 순이었음
-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는 부모가 12.0%(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4.4%(42건) 등의 순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 및 직군

- 학대행위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30.1%(284건)로 10건 중 3건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84.9%(241건)로 가장 많았음.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4.4%(183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20.4%(58건)로 나타났음

바) 장애인학대 장소 등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2.8%(310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31.2%(295건)로 많았음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6.9%(349건)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20.1%(190건)로 많았음

- 장애인학대 발생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장애인학대 발생빈도는 1~2회가 87.3%(248건)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장애인학대 발생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 48.8%(103건)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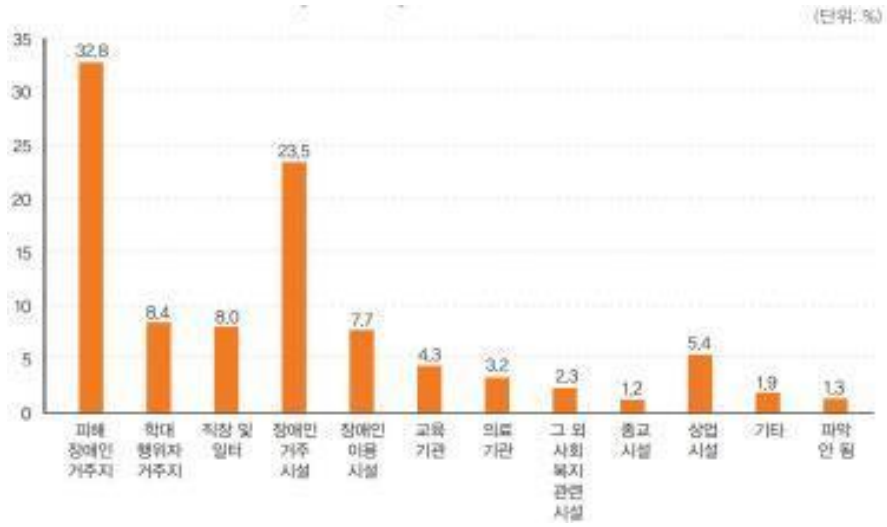

Ⅲ. 우리 지역 문제점

▶ 장애인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

장애 관련 종사자는 물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법적 교육을 강제하고 있고 피교육기관 및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등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는 의무교육과 예방홍보 등이 이뤄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분리, 배제 등이 있는 게 사실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관련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하루 24시간 돌봄을 선언하고 시작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중 장애인 지원주택(레벨 3 주택)을 적기에 임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벨3 조건에 맞는 주택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본인 주택을 장애인들의 거주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렵게 입주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 관계 기관(시설) 간 역할(책임) 및 자기주의

장애인 학대피해자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전국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도 타 시·도에 비해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대피해자는 발생하고 있고 보호 조치할 곳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 조치의 경우는 그 상황이 심각하고 민원도 끊이질 않는다.

또 도전적, 과잉행동이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1대1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보니 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와 함께 입소 후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서비스 저하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최중증융합돌봄센터 등 학대피해 관련 기관·시설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유기적 결합에 따른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시설의 법적 기준 미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

현재 광주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남녀 분리시설로 원장 1인과 10인의 종사자가 필요[8]하나 부족한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 원장도 교대근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시설당 4인 체제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쉼터는 학대피해장애인 외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까지 떠맡고 있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이에 따라 종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근로를 강요받고 있고, 입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따라 우리 지역에 피해장애아동쉼터[9]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 보완과 지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4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시설장 1명(다만,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심터의 연계 운영 등을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Ⅳ.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통합 매뉴얼, 컨트롤타워 지정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시설(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광주광역시, 각 구청, 경찰, 민간상담소 등)의 개입과 협조, 지원이 필요하다.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통합 운영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컨트럴타워를 지정하여 업무 조정과 통합을 위한 협조 체계를 다져야 한다.

▶ 광주학대피해쉼터에 근로자 정원 충원 시급

피해장애인쉼터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분리시설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또 동일 시간대에 단 1명만 근무하는 구조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시설에 종사하거나 여성 직원이 남성시설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자문회의, 적격심의회의, 입소상담, 전화 상담, 관계 기관 협의, 민원상담, 각종 행정업무 등 기존업무 외 필수업무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더해 광주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도 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다른 입소 장애인에게 안정된 쉼 제공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런 문제점 해소와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장을 제외하고 각 시설(남, 여)당 5인의 생활지도원 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특히, 학대 트라우마가 있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은 별도의 안정된 공간에서 분리보호 받아야 하며 이에 맞는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및 관계 근로자 인권 보호 소홀 말아야

[입소자] 여타의 피해자와 다르게 학대피해자는 반드시 학대 가해자가 존재하고 즉각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극도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에서의 필요한 조사와 주거공간제공, 치료와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교육과 시설)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학대피해자, 위기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사들은 보통의 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보다 몇 배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때로는 2차 가해자 또는 또 다른 학대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장애인 인권이 우선이겠지만 종사자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학대피해장애인(보호자)과 종사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 개설이 시급하다.

Ⅴ. 마치며...

군대, 교도소, 소방서, 경찰, 피해장애인쉼터 등은 실적이 없을수록 좋다. 오늘 토론문을 준비하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재확인하게 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오늘 이 토론이 장애인학대를 줄이고 학대피해자를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학대피해자 관련 시설·기관이 할 일이 없어 월급만 축내는 세상이 되길 희망해 본다.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행일 2022년 8월 24일
발행처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전화 062-716-1633 이메일 gaapd2017@hanmail.net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4번길 16 대연빌딩 2층
전화 062-369-0420 이메일 human0420@naver.com

광주광역시의 서용규의원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의회
전화 062-613-5114 팩스 062-613-5203

학대피해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